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환경부령 제813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수압으로 대변기에 사용되는 1회분의 물의 양이 4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5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2등급, 6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절수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81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법 제3조제30호"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로, "별표2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7조의2제2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별표 1"을 "별표 2"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조 중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제18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제18조의2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을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제22조의3제7항 중 "수질기준"을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2) 중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를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평균사용수량} =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8조의2제4항 관련)"을 "(제18조의2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의2]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3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다.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인증 당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절수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1등급

● 절수등급 : 1등급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리터/회)	4이하	5이하	6이하

다. 표시방법

1) 배색 비율은 녹색(C70+M5+Y100+K5)으로 한다.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